



의안번호	제 2017 - 9 호
보 고 연 월 일	2017. 4. 10. (제78차 정기회의)

보 고 안 건

전문위원 업무보고

제 출 자	수석전문위원
-------	--------

목 차

I. 제108차 전체회의	1
1. 일시 · 장소	1
2. 참석자	1
3. 주요 안건	1
II. 논의 결과	1
1.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	1
2. 도주 · 범인은닉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	2
3.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	2
4. 통화 · 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	3
5.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	5
III. 향후 일정	6

【별첨】

- 전휴재, “도주·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”
- 전휴재, “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검토”
- 구민경, “통화·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”
- 이용, “대부업법위반 범죄군 검토”
- 구민경, “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”
- 김도연, “양형기준 설정·수정 관련 의견조희 결과 정리”
- 구민경, “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검토”

I. 제108차 전체회의

1. 일시 · 장소

- 일시 : 2017. 3. 27.(월) 16:00 ~ 18:00
- 장소 : 대법원 1601호 회의실

2. 참석자(11명)

- 수석전문위원, 강수진, 구민경, 김도연, 노수환, 박수정, 범현, 이용, 이진국, 전휴재, 최준혁 전문위원
- 운영지원단장(간사)

3. 주요 안건

- 지식재산권,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, 도주·범인은닉, 통화·유가증권,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결과 검토

II. 논의 결과

1.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

가. 논의결과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됨(구체적 검토내용에 관하여는 주무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)

(1) 형량범위 관련

- 가중영역 권고형량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
-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관한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상향되었다는 의견

(2)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관련

-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요소에서 ‘형사처벌 전력 없음’을 제외하자는 의견

2. 도주·범인은닉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

가. 논의결과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됨(구체적 검토내용에 관하여는 주무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)

(1) 형량범위 관련

- ‘범인은닉·도피’ 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형량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

(2) 집행유예 참작사유 관련

- 주요참작사유 중 ‘현저한 개전의 정(자수, 자백)’이 적정한 사유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

3.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

가. 현행안 유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

-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‘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’의 정의규정으로 수사단계에서의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포함하자는 의견
- 다수의견[8인] ⇨ 현행안 유지 의견
 - 위조증거 등을 근거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증거가 유·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었는지 단정할 수 없음
 - 불기소처분의 사유에는 ‘혐의없음, 죄가 안 됨’ 뿐 아니라 ‘공소권 없음, 기소유예’ 등이 포함되므로, 증거인멸이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
 - 형사사건에서 최종적인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고, 법원의 확정판결은 형사재판절차에서 판단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유·무죄 외에 별도의 기소여부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

- 일반적으로 ‘사건의 결과’의 의미는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 내지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에서의 최종 결과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, 수사결과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결과의 의미가 모호해지고 그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가중될 우려가 있음

○ 소수의견[3인] ⇨ 현행안 수정 의견(양형인자의 정의 수정)

- 형사사건에는 재판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수사사건도 포함됨
- 증거인멸은 재판절차 외에 기소·불기소 처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므로, 이에 대하여 가중할 필요 있음
- 증거인멸 등으로 기소가 될 사건이 불기소 되었다면, 형사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해야 함
- 수정안

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

○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기소·불기소 등 수사절차, 유·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징계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유무 또는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.

나.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의견이 일치된 부분(구체적 검토내용에 관하여는 주무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)

- 위증죄 양형인자의 정의 중 ‘라. 자수, 자백’ 부분에서 양형인자로 고려되는 자백의 시기를 ‘형법상 위증 :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’으로 기재된 부분의 ‘공술’을 ‘증언’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

다. 기타 : 범죄군 명칭의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함

- 위증범죄 ⇨ 위증·증거인멸범죄

4. 통화·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

가. 논의결과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됨(구체적 검토내용에 관하여는 주무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)

(1) 설정대상 및 유형분류

- ‘과실에 의한 수표부도’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
- ‘위조·변조 통화 등 행사죄’는 ‘통화 등 위조·변조죄’와 별도의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
- ‘부정수표 발행 등’ 유형의 소유형1 ‘부정수표 발행·작성/수표부도’ 유형을 금액을 기준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

(2) 형량범위

- ‘국내통화 위조·변조 행사’ 유형의 법정형을 고려할 때, 권고형량 범위를 전체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
- ‘부정수표 발행 등’ 유형의 소유형2 ‘허위신고’ 유형의 법정형이 부정수표 발행·작성/수표부도보다 높으므로, 기본영역의 하한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

(3)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관련

(가) 통화 위조·변조 등 유형

- ‘위조·변조 통화행사죄’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
- 통화 위조·변조의 경우 ‘변조부분이 통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’를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

(나) 통화 위조·변조 등 및 유가증권 등 위조·변조 등 유형

- ‘위조된 통화 및 유가증권이 사기 등 범행의 수단이 된 경우’라는 양형인자를 가중인자로 반영하거나 사기죄의 특별가중인자 중 ‘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’의 양형인자 정의에 ‘통화·유가증권위조’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
- 액면금액을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

- '새로운 기계를 개발하거나 기법을 개발하여 위조·변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'를 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

(다) 유가증권 등 위조·변조 등 유형

- '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'의 주체 및 상대방을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

(라) 부정수표 발행 등 유형

- 부도 또는 부정 발행된 수표의 액면금에 따른 양형인자가 필요하다는 의견
- '악의적 미지급'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, '악의적' 용어 사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

나. 기타

(1) 범죄군 명칭의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함

- 통화·유가증권범죄 ⇨ 통화·유가증권·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
- 대유형2. 소유형2.의 구분에서 '수표 위조·변조 및 행사' ⇨ '수표 위조·변조'
- 통화 위·변조 등 ⇨ 통화 위조·변조 등
- 유가증권 등 위·변조 등 ⇨ 유가증권 등 위조·변조 등

(2)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아래와 같은 내용 추가 필요

3. 처리방법

※ 국내통화 위·변조, 유가증권 위·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·변조된 통화나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.

5.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

가. 논의결과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됨(구체적 검토내용에 관하여는 주무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)

(1) 유형분류 관련

- 채권추심법위반의 '폭행·협박 등 행위' 유형에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여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

(2) 형량범위 관련

- '대부업법위반' 유형의 소유형2 '미등록 대부업 등' 유형의 기본영역 하한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
- '채권추심법위반' 유형의 소유형2 '폭행, 협박 등 행위' 유형의 기본영역 하한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

(3)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관련

(가) 대부업법위반 유형

- '채무자가 되려는 사람이 형법상 지려천박에 해당하는 등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범행한 경우'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
- '이자율 제한위반 등·중개수수료 수령 등' 유형에서 이자율 제한위반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'피해회복' 또는 '처벌불원'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

(나) 채권추심법위반 유형

- '위계·위력을 사용하여 취득한 금전이 정당한 원리금 범위 내에 있는 경우'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
- '피해자 유발'에 해당하는 사유를 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

나. 기타 : 범죄군 명칭의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함

- 대부업법위반범죄 ⇨ 대부업법·채권추심법위반범죄

III. 향후 일정

- 전문위원 제109차 전체회의는 2017. 5. 15.(월) 개최하기로 함